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1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월 10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9.(월)	담당부서	지역경제진흥과
담당과장	김재은 과장(044-203-4420)	담 당 자	안준호 사무관(044-203-4422)

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정

- 산업위기 전(前)·중(中)·후(後)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-

❶ 산업위기 예방조치,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

❷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

❸ 금융, 고용, 산업, 기반시설 등 종합적·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

□ 「**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**」(이하 '지역 산업위기대응법')이 **7.23일(금)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하여 **8.10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

□ 정부는 「**국가균형발전특별법**」에 근거하여 '18년부터 **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**(이하 '산업위기지역') 제도를 시행해 왔다.

○ **중·대형 조선사 구조조정**과 **GM 군산공장 폐쇄**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'18년 **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**하고,

○ **금융, 고용, 산업, 지역상권, 인프라 등 분야**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**지역경제 회복을 지원**해 오고 있다.

◈ **(지정 지역)** ① 군산시 ('18.4.5~'22.4.4), ② 울산 동구 (이하, '18.5.29~'23.5.28), ③ 거제시, ④ 창원 진해구, ⑤ 통영시·고성군, ⑥ 목포시·영암군·해남군

◈ **(지원 수단)**

① **금융** : 기업·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, 특례보증,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

② **고용** : 고용유지지원금, 실직자 재취업 지원, 교육훈련, 생계비 융자 등

③ **산업** : 기술개발·사업화, 국내·해외 판로 지원, 보완산업 육성, 특례 제도 (지방투자 보조금 우대, 국·공유지 임대료 감면, 투자 세제지원) 등

④ **지역상권** : 지역 상품권 추가발행, 전통시장 환경개선, 소상공인 상담 등

⑤ **인프라** : 도로·철도 조기준공, 도시재생, 관광지 개·보수 등

□ 그런데 최근 **코로나19 사태 장기화,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**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**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**되고 있다.

○ 지역은 대개 **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·고용·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**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, 상권 침체 등 **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**하나,

* <例> 조선업 종사자 수 비중 : 울산 동구 (46.1%), 거제 (31.5%), 영암 (35%) 등

○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**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**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**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**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.

□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❶ 위기 전(前), ❷ 위기 초기(初期), ❸ 위기 중(中), ❹ 위기 이후(以後) 등으로 **세분화하고,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체계화**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에 제정된 **지역산업위기대응법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**(지역경제 상시 점검)**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**정보시스템** 구축

❷ (위기 전 : 산업위기 예방조치) **지자체 주도**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**예방계획을 수립·이행**하고, 정부는 **이행에 필요한 지원** 제공

❸ (위기 초기 :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) **주된 산업 침체**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**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** 지원

❹ (위기 중 :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) **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**된 경우 지정하고, 경제 회복을 위한 **지원방안 시행**

❺ (위기 이후 :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) 경제가 **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**하고, **필요시 추가 지원**을 통해 연착륙 유도

❻ (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) **금융·고용·산업 분야** 재정지원과 **세제 감면·보조금·산업입지 관련**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(공포 후 6개월부터)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, 정보시스템 구축 등 **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**하여 **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.**

※ 붙임 :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주요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안준호 사무관(☎ 044-203-44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주요 내용

1 법 개정 기본방향

※ 경과: 법안발의(이학영 의원, '20.12.17), 산중위('21.6.28), 법사위(7.22), 본회의(7.23)

◈ 기존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내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근거를 이 법으로 이전하고 대응 체계, 지원 수단 등 보완

○ (위기 대응) 위기징후 모니터링, 예방조치, 선제대응지역, 산업위기지역, 연착륙 지원 등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 정립

○ (지원 수단) 국가 보조금, 기반시설 우선지원, 국유·공유재산 임대료 및 조세·부담금 감면 등 지원수단의 법적근거 마련

2 주요 내용

○ **(목적(§1))**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**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**에 기여

○ **(정의(§2))** "**주된 산업**"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**비중이 높고**,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**파급효과가 큰 산업**

- "**선제대응지역**"은 **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**되는 지역

- "**산업위기지역**"은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**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**

○ **(산업위기대응 심의위(§5))** 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지역의 지정, 지원 등에 필요한 **주요 사항을 평가·조정**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

○ **(지역산업정보시스템(§6))**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에 대한 **조사**를 실시하고, 수집된 자료의 **분석 및 활용**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
◈ (위기前)예방 조치 → (위기初期)선제대응지역 → (위기中)산업위기지역 → (위기以後)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 마련

⇨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및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

○ (산업위기 예방조치(§7)) 지자체 주도로 **특정 산업**에 대한 **예방계획을 수립·이행**하고, 정부는 계획의 **이행에 필요한 지원** 제공

○ 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(§8)) **주된 산업의 침체**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**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** 지원

※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원수단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

○ 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§9·10)) **주된 산업과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**을 지정하고,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**지원방안을 수립·시행**

- (지정 절차) **산업위기지역계획** 수립 및 **지정 신청** → 서면검토 및 **현장실사** → 산업위기대응 **심의위** → 지정여부 결정

- (지정 요건) ①특정산업에 대한 **지역경제 의존성**, ②**산업 침체**, ③**지역경제 침체**, ④**지원 필요성** 등 **모두 충족**

※ 세부 지표 및 지표의 정량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

- (지정 기간) **2년 범위에서 지정 및 연장** 가능(**총 5년 한도**)

○ (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(§10·12)) 지역이 **충분히 회복된 경우 지정을 해제**하고, **필요시 추가 지원사업***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

* 산업위기 예방조치(§7)의 절차 및 지원수단 등 준용

○ (절차의 신속 진행(§14)) 예방조치, 선제대응지역 등 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**지역경제 침체로 확산**될 경우 **산업위기지역으로 신속전환**

◈ **금융·고용·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·보조금·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장·단기 지원수단의 근거 마련**

⇨ **지역산업·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종합적·체계적 지원**

○ **(자금 지원 등(§15))** 기업에 **자금 지원, 융자 및 보조금 지원, 보증**제도 수립·운용, **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 지원** 등

○ **(기반시설 우선 지원(§16))** 도로·용수 등 **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**, 「**산업입지법***」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**기반시설 지원 우대**

* 제29조(기반시설 지원)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항만·도로·용수·전기 등 기반시설은 국가·지자체·공급자가 우선적으로 지원

○ **(인력양성 지원(§17))** **근로자, 퇴직자** 등을 대상으로 **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** 등을 실시

○ **(연구개발 활동 지원(§18))** **연구개발, 기술이전, 사업화** 등을 추진하는 기업·기관·단체 등에 **행정적·재정적 지원**

○ **(컨설팅 지원(§19))** 기업에 경영·기술·재무·회계 등 **컨설팅 지원** 및 개선에 필요한 **지원수단과 연계**

○ **(국유·공유재산 임대료 감면(§21))** 산업위기지역 내에 **신·증설**시 시행령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

○ **(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(§22))** **관련 법령**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에 대하여 **조세 및 부담금** 등을 **감면**

○ **(「산업집적법」에 관한 특례(§23))** 산업용지 분할시 「산업집적법」 규정(1,650m^2 이상)에도 불구하고 **900m^2 이상의 소규모 분할을 허용**

○ **(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(§24))** **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** 편성시 시행령에 따라 「보조금법」 규정보다 **인상된 보조율을 적용** 가능